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2022년 11월 21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2년 10월 13일, 김재진 의원 외 45명
- 나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1일
- 다. 상정일자: 제31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2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김재진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,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: 피재황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‘조기폐차’ 보조금 지원 제도를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- 서울시는 2005년부터 「대기환경보전법」과 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노후 경유차(5등급)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, 2022년 10월까지 총 206,612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음.

〈서울시 연도별 조기폐차 추진 현황〉

(단위: 대)

구분	계	'05~'10	'11~'15	'16~'20	'21	'22.10.
조기폐차	206,612	30,874	40,532	125,843	8,204	1,159

지원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인 차량(총중량 3.5톤 미만)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폐차 후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, 그간의 노력으로 실제 운행 중인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는 약 7천여 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.

〈서울시 4·5등급 경유차 현황('22.10월말 기준)〉

(단위: 대)

구분	총계	DPF 부착차량	미조치 차량		
			계	실제 운행차	미운행차*
4등급	107,399	28,000	79,399	77,642	1,757
5등급	113,915	61,960	51,955	7,468	44,487

*미운행차 : 5년 이상 정기 미검사 차량 및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의미함

- 이에 환경부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¹⁾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대상 경유차를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,

1) 개정 '22.8.17., 시행 '23.1.1.

동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 관련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와 같이 조기폐차 권고대상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다만,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400만원²⁾으로 책정하고 있으나, 이 금액으로는 적극적인 조기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을 판단되는바, 실거래 중고가와 기준단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.

<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금액(국비 60%, 시비 40%)> (단위: 천원)

구 분		상한액 (기본+추가)	지원율	
			기본	추가 지원
총중량 3.5톤 미만	5인승 이하 승용	3,000	50%	50%(1·2등급 자동차 구매시) + 50만원(무공해차 구매시)
	그 외 일반차량	3,000	70%	30%(1·2등급 자동차 구매시)
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,400	100%	200% (Euro6 이상 차량 신규 등록 시 폐차한 차보다 동일 배기량 또는 작은 차량 구입 시)
	3,500cc ~ 5,500cc	7,500		
	5,500cc ~ 7,500cc	11,000		
	7,500cc 초과	30,000		
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		40,000		

※ 총 중량 3.5톤 미만 저소득층, 소상공인, 장차불가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

※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(상한액 범위 내)

<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----- ----- .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 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신 설>	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 제18조의2(조기폐차 권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 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 1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 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

2)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4등급 경유차의 기준단가 평균액

[참고]

「대기환경보전법」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(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·도 또는 시·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1.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
2.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
3. 저공해엔진(혼소엔진을 포함한다)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

제79조(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)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.

1. 자동차: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조기폐차 권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

1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
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

제19조제1항제2호 중 “5등급”을 “4등급과 5등급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2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 <u>다만,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<u>5등급</u>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<단서 삭제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2(조기폐차 권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1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</p> <p>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</p> <p>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4등급</u> <u>과 5등급</u>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